

항보수정 지음, 「공인노무사 민법 조문」 제2판 사용자를 위한 추록

새로운법

민법 [시행 2018.2.1.] [법률 제14965호, 2017.10.31., 일부개정]으로 정오표를 작성합니다.

[1] 8면 제5조의 제2항 수정:

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.

[2] 15면

제26조 아래 ‘핵심/판례 표’ 제25조 아래로 이동

[3] 22면 제45조 제3항 추가:

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
[4] 25면 제59조 제1항 심표 삭제:

… 위반할 수 없고 특히 …

[5] 25면 제60조 수정:

제60조 [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]

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(18)

[6] 28면 제71조 내용 중 (발신주의) 삭제:

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 (16)

[7] 30면 제85조 제1항 수정:

…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…

[8] 32면 제95조 내용 중 중점을 심표로 수정:

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, 감독한다. (11)

[9] 48면 제111조 제1항, 제2항 수정:

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 (11)

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(11)

[10] 57면 제135조 제1항, 제2항 수정:

-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(05, 08)
-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11] 61면 제141조 수정:

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(償還)할 책임이 있다. (05, 06, 08, 11, 14, 17)

[12] 62면 제144조 제1항, 제2항 수정:

-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
-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13] 64면 제146조 내용 중 쟁표 삭제:

…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…

[14] 83면 제379조 수정:

… 없으면 연 5분으로 …

[15] 93면 제398조 제5항 수정:

-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16] 104면 제407조 수정:

… 위하여 그 효력이 …

[17] 108면 제415조 수정:

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(05, 14)

[18] 113면 제428조의3 제1항, 제2항 수정:

-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다.

[19] 129면 제460조 수정:

… 통지하고 그 수령을 …

[20] 183면 제590조 제1항 마침표 추가:

…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.

[21] 201면 제652조 수정:

제627조, 제628조, 제631조, 제635조, 제638조, 제640조, 제641조,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.

[22] 203면 제660조 제3항 수정:

…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 …

[23] 207면 제674조의4 제2항 수정:

… 계약상 귀환운송(歸還運送) 의무가 …

[24] 220면 제717조 수정:

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.

1. 사 망
2. 파 산
3. 성년후견의 개시
4. 제명(除名)